

4.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5,860호 1998. 8. 10.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노후시설개체투자·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투자 및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범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범위를 대기업의 모든 시설투자로 확대함으로써, 제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 요 내 용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9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투자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투자

세액공제에 대한 특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6월 30일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은 제24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회보